

대 법 원

제 1 부

판 결

사 건 2006도4981 통신비밀보호법위반
피 고 인 피고인
상 고 인 검사
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06. 6. 28. 선고 2006노563 판결
판 결 선 고 2006. 10. 12.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이 유

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.

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“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.”라고 정한 것은,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다.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“타인간의 대화”라고 할 수 없으므로,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

대법관 김지형 _____